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전문

우리 사회과학대학은 사회의 제현상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지성의 전당으로, 인류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배양시켜 인간 사회를 밝고 맑게,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지성인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학생은 보편적 진리의 수호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인간으로의 정진을 기본 기조로, 학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고 자주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진리 탐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사회과학대학 전체 학생의 자발적인 의지를 모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을 2013년 11월 25일, 2015년 11월 30일, 2017년 06월 27일에 전면 개정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회원의 창조적 학문탐구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학풍과 대 학문화를 건설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양함으로써 사회발전과 진보적인 대중문화의 창달, 회원의 복지와 편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 본회는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내에 둔다.

제4조(권력) : 사회과학대학 학생의 주권은 사회과학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회원'으로 한다)에 있고 그 권력은 사회과학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제5조(학교당국과의 협의) : 본회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당국의 제반회의에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 회장, 학생회간부, 대의원장 등 학생대표자가 참석하며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 ①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②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③ 학생신분 및 본회활동에 관한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 ④ 사회과학대학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
- ⑤ 사회과학대학의 특성화 또는 장단기 발전에 관한 사항
- ⑥ 회원다수의 요구에 의한 사항
- ⑦ 기타 본회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과 학문) : 회원은 교육과 학문의 권리를 가지며 본회는 그 자주성·전문성·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7조(정보공개) : 본회는 기구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존해야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을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 2장 회원

제8조(자격) : 본회의 회원은 대학원생과 휴학생은 제외한 사회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9조(권리)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① 회원은 본회의 주체가 되며 제반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본회 및 예하 자치기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회원은 본회 및 예하 자치기구의 활동과 관련된 의사 결정시 언제든지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회원은 본회의 사업계획, 재정, 그 밖에 운영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 ⑤ 본회의 회원은 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회원의 자율성에 반하는 부당한 침해가 있을시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의 권리를 가진다.
- ⑦ 본회는 회원의 권익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시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 ⑧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10조(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본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학생총회

제11조(직위) :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2조(구성) :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전체로 구성한다.

제13조(의장) :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시에는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소추시에는 대의원장이 임시의장이 된다.

제14조(권한) :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가 관련된 중대 사항을 토론하고 의결한다.

제15조(소집) :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을시 의장이 소집한다.

- ① 회원 150인 이상의 요구시
-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요구시
- ③ 대의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요구시
- ④ 학생회장의 직권 사용시(단 이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만 적용한다.)

제16조(공고) : 학생총회는 목적을 명시하고 3일 이전에 공지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생회장이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 학생총회 의결은 회원 1/10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임) : 회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19조(위임장) : 회원의 의결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 사유, 성명, 자필 서명을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작성기간은 총회 공고 후부터 총회 성립 시까지로 한다.

제 4장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제20조(명칭) : 운영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라 칭한다.

제21조(의장) :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시에는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22조(구성) : 단운위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단 학과 및 학부 부학생회장의 참석도 인정한다.

제23조(출석) : 단운위는 의장 직권으로 특별기구장, 집행부, 대의원회 등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석자는 의결권이 아닌 발언권만 지닌다.

제24조(회의) : 단운위는 학기 중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5일 이내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 : 단운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① 학생회 사업계획
- ② 예산 및 결산안
- ③ 학생회비 일체 결의안
- ④ 회칙 개정 발의
- ⑤ 대의원회 요구 사항
-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제26조(의결) : 단운위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각각 1표씩 가진다. 단 각 학과 대표는 2인 이상이 참여하여도 1표로 계산한다. 단 제 4장 25조 ③,④항의 경우 재적운영위원 3/4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3/4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제27조(지위) :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28조(역할) : 학생회장은 본회의 제반 활동을 총괄하며 본회와 관련된 사항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유고¹⁾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29조(임기) :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30조(신분보장) :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1조(권한)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① 학생회장은 본회의 대표업무 및 운영을 총괄 한다.
-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학생회장은 집행부의 각 국장 및 차장, 수습간부, 특별기구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

제32조(의무)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① 학생회장은 회원의 요구에 부합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② 학생회장은 본회를 수호하며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③ 학생회장은 회원의 요구에 응해 대학 당국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²⁾할 의무를 지닌다.

제33조(권한대행) : 정학생회장의 궐위시 부학생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 학생회장 모두 궐위시 단원 위 운영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하며 학생회장의 휴학 및 졸업은 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단,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일 경우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5장 18조 1항에 따른다.

제 6장 학생회

제34조(기구) :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 ① 기획국 :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 ② 사무국 : 각종 사업의 제반 사무업무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을 담당한다.
- ③ 홍보국 : 각종 사업의 제반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 ④ 문화국 : 문화예술에 관련한 사업을 담당한다.
- ⑤ 연대사업국 : 각종 사회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 ⑥ 체육국 : 체육활동에 관련한 사업을 담당한다.
- ⑦ 복지국 : 각종 학생 복지활동에 관련한 사업을 담당한다.
- ⑧ 기타 학생회활동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각 부서의 장) : 각 부서의 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36조(구성) : 각 부서의 설치, 구성, 직무범위, 역할은 학생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기능) : 각 부서는 학생총회 및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총괄하에 해당 사업을 집행한다.

제 7장 특별기구

제38조(목적) : 특별기구는 학생회 집행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학생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39조(설치) :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여학생자치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등의 특별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0조(특별기구의 장) : 특별기구의 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예하의 집행간부를 임명 할 수 있다.

제41조(직무) : 특별기구의 설치, 구성과 직무범위는 학생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학생회장의 총괄하에 둔다.

2)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씀

제 8장 대의원회

제42조(지위) :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감사·자문기구이다.

제43조(의무) :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① 대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회원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의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은 외부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할 수 없다.

제44조(구성) : 대의원회는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각 학과 및 학부에서 원칙상 1인을 선출한다. 당해 입학 정원이 1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2명을 선출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각 학과 및 학부에서 1개만 가진다.

제45조(제한) : 대의원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위원, 학생회 집행간부, 특별기구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6조(기구) : 대의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과 의장이 임명한 감사국장, 사무국장, 서기 등의 집행간부를 둘 수 있으며 집행간부들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직무) :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의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이를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선출) : 대의원회 의장은 입후보하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9조(임기) :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1년으로 한다.

제50조(궐위) : 대의원의 궐위시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장 궐위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의장 궐위시 대의원 중 1인을 의장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 궐위시 보궐선거 또는 대의원회에서 간선한다.
- ④ 학과 및 학부 대의원 궐위시 학과 및 학부 학생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불가피한 경우³⁾에 전임자가 지명한다.

제51조(역할) : 대의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칙개정 발의 및 의결
- ②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서의 심의 및 의결
- ③ 정·부학생회장의 탄핵
- ④ 회계, 서무 및 기타업무에 관한 감사
- ⑤ 선거 공약에 관한 감사
- ⑥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승인
- ⑦ 정·부학생회장 및 학생회 집행부, 학과 정·부학생회장 및 집행부 출석 요구
- ⑧ 집행부의 해임 의결
- ⑨ 사회과학대 학생회 및 산하 자치기구에 대한 선거관리권
- ⑩ 학생회비에 관한 일체 4)결의안 및 수익사업에 관한 감사, 심의, 의결, 승인

3) 학생총회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만 해당된다.

⑩ 회계 문서 보존 : 문서 열람시 대의원회 중 1인이 참관하며 자료의 반출은 금한다.

제52조(감사) : 대의원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및 학부, 대의원회 등을 감사할 수 있다.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제53조(선거관리) : 대의원은 사회과학대학 학생자치기구의 선거관리권을 가지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4조(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임기 중 1회 이상 소집한다.

제55조(임시총회) : 다음과 같을시 대의원회 의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대의원의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 ③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또는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시
- ④ 사회대 70명 이상의 학우들이 대의원회에 대한 건의사항을 올릴시

제56조(최초회의) : 회기의 최초회의는 전임 의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57조(의결) :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제8장 51조 ③항의 경우 재적대의원 3/4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장 학과 및 학부 학생회

제58조(지위) : 학과 및 학부 학생회는 각 학과 및 학부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59조(구성) : 학과 및 학부 학생회는 각 학과 및 학부 학생 전체로 한다.

제60조(회장) :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은 각 학과 및 학부 학생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단운위의 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61조(학생회칙) : 각 학과 및 학부 학생회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으며 본 회칙과의 충돌 시 각 학과 및 학부의 회칙을 우선시 한다.

제62조(자격) :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 및 학부를 자격으로 하며 인원수에 상관없이 각 학과 및 학부별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 10장 비상대책위원회

제63조(목적) : 학생자치기구장 미선출 또는 탄핵시,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복지와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한다.

제64조(구성) : 회원 중 최소 3인 이상의 위원과 1인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5조(위원장) :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에 따라 선출된다.

- ① 학생자치기구장 미선출 시, 전임 학생회장이 지명한다.
- ② 학생자치기구장 탄핵 의결시, 학생총회를 통해 호선한다. 이 때 학생총회의 성립은 본 회칙 제3장 17조에 따른다.

제66조(역할) :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의 역할과 권한을 대행한다. 단, 학생회비 운용 시 본 회칙 제66조 ②항을 따른다.
- ② 학생회비 계좌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되, 예산 운용시 대의원장 혹은 해당 학과 및 학부 대의원의 관할 하에 집행한다.
- ③ 학생회비 집행, 사업 진행에 있어서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감사를 받는다.
- ④ 차기 자치기구가 출범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7조(임기) : 차기 자치기구 성립 시까지로 하며, 최대 90일로 제한한다. 단,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5장 18조 ②항의 경우 재·보궐 선거 시행시까지 유지될 수 있다.

제 11장 사회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제68조(역할) : 사회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단운위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회과학대학의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결정하는 기구이다.

제69조(구성) :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대의원장 및 부대의원장,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 학과 및 학부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단 학과 및 학부 부학생회장의 참석도 인정한다.

제70조(의장) : 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시에는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소추시에는 대의원장이 임시의장이 된다.

제71조(소집) :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을시 의장이 소집한다.

- ① 학생회장의 직권 사용시
- ② 대의원장의 요구시
- ③ 학생대표자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제72조(공고) : 학생대표자회의는 목적을 명시하고 3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생회장이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73조(의결) :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장 예산운용

제 1절 운용

제74조(목적) : 이 장은 본회 및 산하자치기구의 예산운용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6조(재원) :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예산으로 운영한다.

- ① 학생회비
- ② 수익사업이익금
- ③ 각종행사의 격려금 및 후원금
- ④ 각 행사별 회원이 납부한 회비

⑤ 전년도 이월금

⑥ 기타 자체조달경비

제77조(사용) : 본회의 경비는 본회 활동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8조(공개) : 본회의 예산에 관한 운용 및 결산사항, 감사 자료를 회원 또는 대의원회가 원할 경우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79조(계좌) : 본회의 예산과 관련한 계좌는 하나의 계좌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 설립시 계좌번호를 대의원회에 보고해야하고, 통장비밀번호, 카드비밀번호를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다면 알릴 의무가 있다.

제80조(업무추진비) : 본회는 업무의 능동적인 집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인정한다. 단 ①항의 경우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 제19조 4항에 따른다. 업무추진비의 과다지출여부는 대의원회의 엄정한 판단에 맡긴다.

① 학생회 간부 및 단과대학 운영위원의 회식비

② 집행부의 LT비용

③ 기타 업무추진용 회식, 선물, 화환, 격려금 등

제81조(수익사업) : 대의원회를 제외한 본회 및 산하자치기구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대의원회운용비) : 대의원회 운용비는 총대의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학생회장과 대의원장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3조(문서보존) : 회계장부 및 영수증 등 감사자료의 문서보존 기한은 3년으로 하며 이는 대의원회에서 보관한다.

제84조(학과학생회비) : 학과학생회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과의 기준에 따르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과 학생회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85조(학과 학생회비 반환) : 학과 회원이 회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회원이 학생회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학과학생회비 반환은 한 학기 단위로 반환해줘야 한다. 단 이 경우 재적증명서를 확인한 후 반환이 가능하다.

제 2절 감사

제86조(목적) : 본회 및 산하자치기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7조(감사시행) :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 13장 선거

제88조(목적) : 본 장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선거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9조(선거시행) :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 14장 탄핵 및 해임

제90조(목적) : 본회 및 산하자치기구의 집행부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회칙에 위배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91조(탄핵대상) :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과 및 학부 정·부학생회장을 대상으로 한다. 단 각 학과 및 학부 정·부학생회장은 각 학과 및 학부의 회칙을 따르며 각 학과 및 학부의 회칙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본 회칙을 따른다.

제92조(해임대상) : 학생회 집행부 및 특별기구 임원

제93조(시한) : 탄핵발의부터 판결까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94조(발의) : 대상자의 회칙위배 및 법적·도덕적 문제가 있을시 다음의 요구로 발의한다.

- ① 회원 1/4이상의 요구시
- ② 운영위원의 3인이상의 요구시
- ③ 대의원 3인이상의 요구시
- ④ 대의원의 요구시

제95조(권한정지) : 탄핵 및 해임의 발의를 받은 자는 판결이 있을 때 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제96조(권한대행) : 학생회장의 권한 대행은 본 회칙 제5장 33조를 따른다. 단 학생총회 시는 본 회칙 제3장 13조를 따른다. 부학생회장 탄핵 및 집행부 해임의 경우 학생회장의 재량에 의한다.

제97조(의결) : 의결은 본 회칙 제8장 57조에 의해 재적대의원 2/3→3/4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8조(징계) : 대의원회는 탄핵과 관련하여 대학당국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고 법적문제가 발생시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제 15장 회칙개정

제99조(발의) : 본회의 회칙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장의 발의
- ② 대의원장 발의
- ③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
- ④ 대의원 3인 이상의 발의
- ⑤ 운영위원회의 1/2이상의 발의

제100조(공고) : 발의된 학생회칙은 대의원회 의장이 즉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의결) :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2조(시한) : 대의원회는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 후 48시간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103조(발효) : 개정 의결된 회칙은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 1조(시행) :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소급) : 본 회칙은 소급 적용치 아니한다.

제 3조(개정) : 전면개정 2017년 08월 02일